【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-479호】

# 지방세 공시송달

○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: “ 별첨 ”

○ 서류의 송달지: “ 별첨 ”

○ 서류의 명칭: 지방소득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(2026년 7월 독촉분, 8월 독촉분, 9월 독촉분, 9월 수시분, 10월 수시분)

○ 서류의 내용: “ 별첨 ”

위의 서류를 2026.10.15. ~ 2026.11.2.까지 귀하(귀 법인)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(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30일로 변경하여)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3일

**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**